

장관의 정책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쾰른고등법원 1985. 7. 2 판결
-15U 127/85 사건-

적용법조

WDR(서부독일라디오방송국)정관 제 3 조 제 2 항, 독일민법 제 823 조 및 제 1004 조

판결요지

1. 정정보도청구권 이라는 것은, 출판물이나 방송으로 표현된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행정부의 장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가 제기될 수 있는 사들이 장관에 의하여 주장된 경우에는, 그 장관은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원고가 수개의 신청 중 근거있는 점들에 대하여서만 한정하는 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즉시」 인락할 기회를 가졌던 경우에 있어서는, 수개의 독립된 점들 중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한 부분은 인용되고 나머지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사실개요

원고는 「Monitor」 (감시자)라는 방송프로의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방송기회에 그의 정정보도문이 방송될 것을 신청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결국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명하였다. 즉, 「1985년 1월 22일자 및 1985년 2월 5일자 'Monitor'라는 방송프로에 있어서 퍼싱 미사일사고에 관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1. 미국측의 비밀문서와 사진자료들에 의하면, 퍼싱 II 미사일의 독일 배치에 앞서서 실시된 시험비행의 절반 정도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1985년 1월 22일자 'Monitor'방송프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22차의 시험비행 중에서 18차의 비행이 성공적인 것이었음이 사실이다.

2. 1985년 1월 25일자 독일연방의회 질의시간에 허위의 숫자를 나열하면서 본 방송프로의 제작자를 비난한 바 있던 Worner 장관으로부터, 위 프로의 제작자는, 어떠한 숫자가 허위이었는지의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날까지도 하등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1985년 2월 5일자 'Monitor' 방송프로에 있어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나 개인이나 또는 내가 맡고 있는 연방 국방성은 오늘날까지 위 방송제작자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985. 3. 11 본.

연방 국방성 장관 Dr. Manfred Worner.」

나머지 점들에 대한 정정보도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판결이유

1.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중에서 제 1 항 및 제 5 항에 대해서만의 인용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인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부분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 307 조).

2. 주 청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제 2 항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정정보도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한다. 즉 정정보도문이 본래의 원문기사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인상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문 기사를 보충하거나 또는 이를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하여도 정정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정정보도문이 원문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단지 다른 말로써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양자의 묘사에 따르면 사고장소로부터 250m 의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다른 미사일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원문기사에서 「단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250m 밖에는 바른 미사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정정보도문은 위 원문기사의 내용에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위 원문기사에 새로운 어떠한 것도 추가한 것이 없는 것이다.

3. 그밖에 원고가 그의 주 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 3 항 및 제 4 항에 있어서도 정정보도의 청구는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 3 항에 관하여 원고는 원문기사의 내용을 적절하게 재현하고 있고 이 점에서 원심법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위 제 3 항 및 제 4 항에 있어서 원고는 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정보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법리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자가 원문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인지를, 의심스러운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의 원문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에게 그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게 하는데에 주목적이 있는 자기방어의 전환을 부여하는 것이다(BGHZ. 66, 182, 195; BVerfGE 63, 131, 142).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민법 제 823 조 및 100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지 및 취소의 청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중지 및 취소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정정보도청구권도 역시,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출발점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인격에 대한

묘사에 관한 개개인의 자결권을 개인적인 명예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우월한 권리로서의 보호가 허용되는 인격권의 표상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개인은 그가 제삼자나 일반공중에 대하여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BVerfGE 63, 131, 142). 이와 같은 개개인의 인격의 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정정보도청구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결국에 있어서는, 원문기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타인에 관하여 어떠한 묘사를 함으로써 그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의 자결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귀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부터 보면,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어떤 의사표시가 타인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그의 진술이나 성격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 타인에게 향해져 있는 경우에만 그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원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의 제 5 항 즉 원고가 그에게 행해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의문의 여지없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양당사자에게 고지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 사실 그대로 보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진술에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그 진술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여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자도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명한 정치인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진술자의 신뢰성이 문제로 되고,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그의 인격에 관한 사항이 문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원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의 제 1 항도 역시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양당사자에게 고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어떤 개인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활동이나 관심의 대상인 「분야」가 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묘사에 관한 개개인의 자결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치가가 활동하고 있는 정치의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실이 주장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인격에 대한 진술이 문제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론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 그 정치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장관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사실들이 주장된 경우에는 그 장관 개인의 인격묘사에 대한 자결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 기하여 당원은, 1982년 11월 2일자의 미사일 운반중의 사고에 있어서 그 당시 운반 중이던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치되어 있었는지와 1985년 1월 11일자의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아니하였지만, 1985년 2월 1일자에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미사일들이 미군기지인 발트하이드에서 조립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 이 사건의 정정보도청구의 제 3 항 및 제 4 항을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는 원고(즉, 장관)의 결심이다.

그 자신의 행동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군비증강정책의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반대주장의 사실들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라는 개념을 가장 광의로 해석한다면 장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진술된 경우에도 역시 그 장관의 인격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은 매우 넓게 확대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장관의 군비증강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사실이 주장된 경우에는 그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책(여기에서는 군비증강정책)에 보조하기 위하여 투입된 다른 모든 정치가들도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쟁은 언론이 매체에 있어서 「원문기사」 및 「정정보도청구」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II

이 사건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 93 조에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즉시 인낙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원인도 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정정보도문은, 정정보도청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항에 관련한 내용들만을 포함하여 게재되고 방송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항들만이 게재되고 방송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정보도문이 수개의독자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즉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일부의 점에 있어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정보도청구는 그 전부가 이행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수개의 독립된 쟁점 중 일부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 Frankfurt 고등법원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AfP 1979, 359). 즉 첫째, 원고는 이유 있는 점들에 한정된 청구를 하고 있을 것. 둘째, 피고는 「즉시」 인락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 것 등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양당사자들은 변론기일의 전일에 이미 그들이 기일에 소송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가 기일에 이유있는 점에 한정된 신청을 즉시 인락하였다는 사실로서부터 바로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 역자 주

위 쾰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비판의 내용은, 하나의 정정보도청구 중에 수개의 독립된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의 일부는 이유가 없고 일부만이 이유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물론 위 판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 일부만을 인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위 판결에서 인용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과거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던 판례이고, 오히려 독일에서의 판례의 주류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예;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일관된 판례(AfP 79, 405; 80, 104; 81, 408; 84, 155)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례(AfP 85, 60))본 판결은 극히 소수의 견해를 취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독일에서의 위와 같은 비판내용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한 실무에 있어서 보다 크게 참고로 되는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정치가-특히 장관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그 정치가나 장관이 이를 이유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있는 것이다. 즉 그 비판의 내용이 그 정치가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개인의 인격의 묘사에 관한 자결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가나 장관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relevant) 반대의 의견이 주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구성은 역자가 우려해온 우리나라의 실무에 있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의 남용 내지는 악용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거나 제한될 위험성(특히 관청이나 정치가가 이를 남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관련하여 (위 위험성의 상세에 관하여는 양삼승 판사의 논문 「정정보도문 청구사건에 관한 독일법원의 처리실무」(법조 1985년 7월호 및 8월호)참고)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언론을 구제내지는 보호할 수 있는 이론적인 논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위 점에 관한 좀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정보도제도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